

##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

#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18타경33607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27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백창우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목록1, 4, 5, 6.-2014.10.21. 가압류 목록2, 3.-2014.1.8. 가압 류		배당요구종기	2019. 2. 7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입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입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	
<p>&lt;비고&gt;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                목록1 갑구 277번, 목록2 갑구 235번, 목록3 236번, 목록4 235번, 목록5 234번, 목록6 233번 최선순위 가처분(2009.4.24. 접수 제15318호)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.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해당사항없음</p> <p>비고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괄매각</li> <li>-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</li> </ul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  
 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18타경33607

---

[물건 1]

1.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43  
임야 134184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362번 조동진 지분(474744분의 2314) 전부

2.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43-1  
임야 112624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345번 조동진 지분(474744분의 2314) 전부

3.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43-2  
임야 111583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339번 조동진 지분(474744분의 2314) 전부

4.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요천리 산43-3  
임야 73178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313번 조동진 지분(474744분의 2314) 전부

5.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43-4  
임야 39670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312번 조동진 지분(474744분의 2314) 전부

6.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43-5  
임야 3505m<sup>2</sup>

매각지분 갑구313번 조동진 지분(474744분의 2314) 전부

---

---

감정평가액	35,717,867
-------	------------

---
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18	8,576,000	857,600
2회	2026.04.22	6,003,000	600,300
3회	2026.05.20	4,202,000	420,200
4회	2026.07.08	2,941,000	294,100

---

- 일괄매각
  -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
-